

의안번호	2212007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9.26.
추계번호	25B424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2의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의2 (적용범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¹⁾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²⁾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

1)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할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녹색제품구매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법 제6조)³⁾,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법 제11조, 제15조)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법 제17조의3)⁵⁾등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 3)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4)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며, 환경부는 녹색소비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 중임

－ [참고자료 1] 녹색제품 개요

－ [참고자료 2] 주요기관별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5 예산	2026 예산안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1531-301)	녹색소비활성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400	400

자료: 환경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녹색제품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범위 확대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추진의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녹색제품구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제품의 종류와 규모, 해당 제품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5)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녹색제품 개요

(자료: 환경부)

- (환경표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부여('92.6.부터 시행)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GR)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GR)”에 대하여 품질인증('97~, 산업부)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20.7.부터 시행)

< 녹색제품 현황 >

구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2개 제품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한 모든 제품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4개 분야
인증 제품수	4,838개 업체 18,322개 (기본)제품('25.7월말 기준)	325개 업체 1,277개 제품('25.7월말 기준)	351개 업체 425개 품목('25.7월말 기준)
인증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greenproduct.go.kr	edp.or.kr	ripa.or.kr

[참고자료 2] 주요기관별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 환경부)

□ 국가기관[대상기관: 56개]

(단위 : 백만원)

순위	기관명	2024년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구매이행계획(A)	구매실적(B)	증감(B-A)
계	국가기관	159,740	538,333	374,182
1	국방부	146	130,694	130,548
2	교육부	43,700	104,805	61,105
3	국토교통부	19,956	69,254	49,298
4	경찰청	9,936	43,802	33,86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32	22,043	17,611
6	대법원	9,109	19,744	10,635
7	법무부	13,325	18,365	5,040
8	해양수산부	1,142	15,396	14,254
9	문화체육관광부	3,466	12,328	8,862
10	환경부	460	9,793	9,333
11	국세청	6,900	8,517	1,617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45	7,972	6,727
13	행정안전부	2,258	7,580	5,322
14	해양경찰청	382	7,554	7,172
15	고용노동부	2,065	6,869	4,804
16	산업청	4,811	5,397	586
17	검찰청	2,500	4,078	1,578
18	관세청	480	3,949	3,469
19	국회 국회사무처	4,681	3,815	△ 866
20	소방청	3,775	3,642	△ 133
21	농촌진흥청	3,735	2,934	△ 80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85	2,862	1,977
23	국가보훈부	377	2,552	2,175
24	농림축산식품부	미제출	2,432	-
25	산업통상자원부	444	2,305	1,861
26	보건복지부	미제출	1,946	-
27	질병관리청	956	1,794	838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275	1,778	503
29	국가유산청	2,444	1,727	△ 717
30	병무청	428	1,516	1,088
31	통계청	1,841	1,255	△ 586
32	외교부	1,548	1,092	△ 456
33	기상청	2,000	999	△ 1,001
34	중소벤처기업부	1,458	979	△ 479
35	방위사업청	487	963	476
36	특허청	565	890	325
37	조달청	2,452	868	△ 1,584
38	감사원	320	615	295
39	공정거래위원회	636	356	△ 280
40	통일부	368	342	△ 26

(단위 : 백만원)

순위	기관명	2024년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구매이행계획(A)	구매실적(B)	증감(B-A)
41	기획재정부	192	327	135
42	국민권익위원회	245	311	66
43	국무조정실	372	304	△
44	인사혁신처	591	263	△
45	헌법재판소	248	251	3
46	국가인권위원회	128	206	78
47	새만금개발청	143	175	32
48	법제처	144	144	-
49	여성가족부	74	139	65
50	금융위원회	118	138	20
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	96	△
52	원자력안전위원회	64	67	3
53	방송통신위원회	180	52	△
54	우주항공청	미제출	35	-
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	20	△
56	재외동포청	25	5	△

□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17개]

(단위 : 백만원)

순위	기관명	2024년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구매이행계획(A)	구매실적(B)	증감(B-A)
계	교육자치단체	963,085	1,114,725	151,640
1	경기도교육청	287,518	315,318	27,800
2	서울특별시교육청	70,431	107,627	37,196
3	전라남도교육청	55,268	90,963	35,695
4	경상북도교육청	43,093	70,820	27,727
5	충청남도교육청	47,206	68,266	21,060
6	경상남도교육청	61,536	62,087	551
7	인천광역시교육청	123,863	59,073	△
8	부산광역시교육청	36,791	54,445	17,654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4,009	51,252	7,243
10	충청북도교육청	39,481	47,144	7,663
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6,469	46,538	10,069
12	대구광역시교육청	23,380	38,419	15,039
13	대전광역시교육청	36,719	33,599	△
14	광주광역시교육청	18,154	24,170	6,016
15	울산광역시교육청	18,975	19,544	569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251	15,707	9,456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3,941	9,754	△

□ 교육자치단체[교육청: 17개]

(단위 : 백만원)

순위	기관명	2024년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구매이행계획(A)	구매실적(B)	증감(B-A)
계	지방자치단체	1,373,036	1,954,122	581,086
1	경기도	249,210	449,553	200,343
2	서울특별시	182,956	216,396	33,440
3	경상북도	127,360	186,709	59,349
4	경상남도	111,383	153,280	41,897
5	전라남도	116,250	147,011	30,761
6	충청남도	97,995	139,490	41,495
7	인천광역시	75,163	112,979	37,816
8	강원특별자치도	84,259	98,889	14,630
9	충청북도	66,683	88,360	21,677
10	전북특별자치도	65,268	72,066	6,798
11	부산광역시	60,045	69,782	9,737
12	대구광역시	34,958	51,888	16,930
13	광주광역시	24,579	47,782	23,203
14	울산광역시	31,957	43,468	11,511
15	대전광역시	20,829	34,533	13,704
16	제주특별자치도	23,237	30,456	7,219
17	세종특별자치시	904	11,483	10,579